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허성무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009 발의연월일: 2025. 4. 22.

발 의 자:허성무·최민희·박민규

김문수 • 이재관 • 윤준병

김태선 • 이수진 • 김성환

안도걸 • 박용갑 • 조인철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산업단지 등에 대한 특례를 두어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산업 구조의 급변으로 인하여 산업단지가 생산성 하락 등의 한계를 드러냄에 따라 기존 산업단지를 디지털 및 신재생 에너지 중 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.

이에 노후한 국가산업단지를 첨단산업 중심의 지능화 산업단지로 전환하기 위하여 「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」 을 제정하면서 기업 유치 및 투자 확대를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지역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기존의 산업단지보다 높은 세제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(안 제78조의4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허성무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」(의안번호 제10008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78조의4(지역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감면) ① 「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국가산업단지(이하 이 조에서 "지역국가산업단지"라 한다)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78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.
 - 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(이하 이 조에서 "산업용 건축물등"이라 한다)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 는 증축하여 취득(취득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)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60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.
 - 2. 지역국가산업단지에서 대수선(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.
 - 3. 제1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85를 경감한다.
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.
- 1.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 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
- 2.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(해당 지역국가산업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·증여하 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
- ③ 지역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자에 대하여는 부동산등기 및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.
-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(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)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지역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) 제78조의4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토지 또는 산업용 건축물등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대한 감면) ① 「지역산업균형 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국가산업단지(이하 이 조에서 "지역국가산업단지"라 한다)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78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. 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(이하 이 조에서 "산업용 건축물등"이라 한다)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취득(취득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60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.

-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 다)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 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2028년 12월 31 일까지 경감한다.
- 3. 제1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 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85를 경감한다.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.
- 1.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 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 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 니하는 경우
- 2.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 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 각(해당 지역국가산업단지관 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 외한다)·증여하거나 다른 용 도로 사용하는 경우
- ③ 지역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 는 자에 대하여는 부동산등기 및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

<u>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</u> 제한다.

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 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 을 고려하여 100분의 25(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취득세를 경 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) 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 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.